

2021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(안)

-장관표창-

2020. 11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미래인재정책과

I. 포상 개요

1. 목적

-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·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·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

※ 내년 제54회 과학의 날('21. 4. 21.)에 시상식(전수식) 개최

2. 포상기준

- (수공기간)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
- (제포상 금지기간) 수역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,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

II. 세부추진 계획

1. 규모 및 대상

- 포상 규모 : 총 180명('20년 180명)
- 포상 대상 : 과학기술 연구·행정·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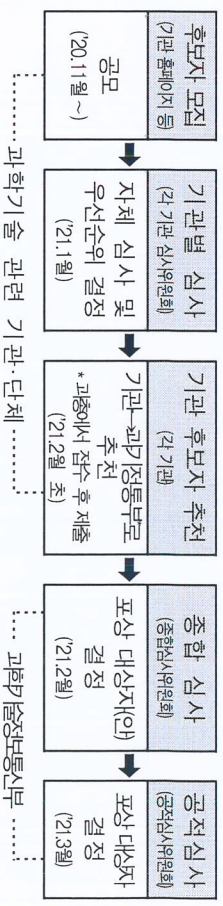
- 정부출연연구기관, 우수기술 개발기연(연구소 포함) 연구원·엔지니어
-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의 직원, 기타 국내·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, 각 시·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

2 추천제한

- 공무원
 -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포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 -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 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포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- 국민
 -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포창이 부적합한 경우
 - 산업제해, 공정거대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 -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제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계 중이거나 제계 예정인자
 - 상훈법 및 정부 포창 규정, 장관포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 포상 또는 장관포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[세부사항 틀임 참조]

3 선정절차



가. 후보자 모집(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)

- (공공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
 - *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출연(연)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
- (추천권자) 소속기관장,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
 - * 단,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
나. 기관별 심사(각 기관)

-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

다. 기관 후보자 추천(각 기관→과기정통부)

-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천

라. 종합심사(종합심사위원회)

- 기관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대상자(인) 및 합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

마. 공적심사(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)

-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,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

4 시상

- 포상대상자 기관 통보 : '21. 4월 초
- 각 기관 별 시상 : '21. 4. 21. 전후

붙임1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

구분	자격기준	추천제한
개인 (공무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 제직기간 3년 이상 · 과기정통부 근무 2년 이상 (실근무기간만 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근속표창 제외) ·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·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· * 경징계(견책·감봉)이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(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)위는 제외) ·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·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·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이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개인 (일반국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(실근무기간만 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·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· 산업체해, 공장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·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·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단체 (대외기관, 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· 사회 이익,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(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) ·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단체 (권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분야 우수권서 	

*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 제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

□ 자격기준

○ 개인표창

- (공무원) 표창추천 마감일(이하 '추천일'이라 함) 기준으로 실 제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무 2년* 이상인 자
 - *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(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)으로 함
- *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 제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
- (일반국민)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

○ 단체표창

- (대외기관·단체)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- (우리부 내 권서) 해당 분야 우수권서

□ 추천제한

-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
-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

◇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(추천제한자)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

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,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·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심의회(공적심의회)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·추천해야 함

*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
-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정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

○ 공무원 표창

- (제표창 금지)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※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

-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징계 또는 불문경과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과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과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지지는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과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※ 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제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

-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
-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범죄,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제판 계류, 언론보도 등)

○ 국민 및 단체 표창

- (제표창 금지)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)

- 단체표창의 경우,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
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아끼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